

경상북도 공고 제2025-1693호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1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안무자, 사무국장 직책에 대하여 연봉제를 도입하고
-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2021년~)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해당 수당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폐지함.(안 제4조의3)
-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안무자, 사무국장의 보수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함.(안 제8조)

- 연봉제 도입에 따라 겸임수당을 폐지하고 호봉조정 규정을 삭제함.
(안 제8조, 제9조)
- 조례 개정예 따라 무용단을 폐지하고 부지회자 직책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함.(별표 1)
- 보수 및 각종 수당 수정(별표 2, 3, 4, 6, 7, 9)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문화예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문화예술과 도립예술단운영팀

전화 : 054-880-3126 / Fax : 054-880-3139

이메일: hoon6063@korea.kr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겸임수당)”을“(지휘자 등 보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안무자, 사무국장(이하 “연봉제 대상자”라 한다)의 보수는 계약에 따라 연봉으로 책정하고, 연간 계약총액의 12분의 1을 매월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봉제 대상자의 연봉은 제3조제1항의 각 호, 제4조의2 및 제6조의 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제4조의4의 가족수당은 별도 지급한다.
- ③ 연봉제 대상자는 전문대학 및 대학에서 교수, 부교수 등 봉급을 받는 자로 겸임 근무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장은 그 대상자의 연봉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상임단원과”를 “연봉제 대상자를 제외한 상임단원과”로, “근무년한”을 “근무 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6, 별표 7,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채용 또는 재위촉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표1]

단원등의 종류와 정원

구 분	직 책	직 급	정 원
국 악 단 (90명)	지 휘 자	4급상당	1
	부지휘자	5급상당	1
	악 장	5급상당	1
	안 무 자	5급상당	1
	훈 련 장	6급상당	1
	수석단원	7급상당	8
	차석단원	8급상당	8
	상임단원	8급상당	62
	비상임단원		7
교향악단 (90명)	지 휘 자	4급상당	1
	부지휘자	5급상당	1
	악 장	5급상당	1
	수석단원	7급상당	13
	차석단원	8급상당	15
	상임단원	8급상당	54
	비상임단원		5
사 무 국 (13명)	사무국장	5급상당	1
	사 무 장	6급상당	1
	사 무 원	7~8급상당	11

[별표2]

봉급지급표

구 분	직 책	월지급액	승급기준
예술단	지 휘 자	연봉제	
	부지휘자·악장· 안무자	연봉제	
	훈 련 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6급상당	
	수 석 단 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7급상당	
	차석단원· 상임단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8급상당	
사무국	사 무 국 장	연봉제	
	사 무 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6급상당	· 단장이 별도로 정함.
	사 무 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7~8급상당	· 초임 : 8급상당 · 8년이상 계속 근무한 단원 : 7급상당

[별표3]

직책수당

(단위 :원)

구분	직책	수당액
예술단	지휘자	450,000
	부지휘자	400,000
	악장, 안무자	300,000
	훈련장	200,000
	수석단원	100,000
	차석단원	50,000
사무국	사무국장	300,000
	사무장	200,000
	사무원	150,000

[별표4]

예능수당

(단위 :원)

구 분	직 책	수당액
예술단	지 휘 자	200,000
	부지휘자, 악장, 안무자	180,000
	훈련장, 수석단원	150,000
	차석단원	130,000
	상임·비상임단원	100,000
사무국	사무국장	180,000
	사 무 장	150,000
	사 무 원	100,000

[별표6]

직급보조비 및 정액급식비 지급표

(단위 :원)

구 분	직 책	지급기준		
		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예술단	지 휘 자	350,000	220,000	130,000
	부지휘자, 악장, 안무자	300,000	170,000	130,000
	훈 련 장	240,000	110,000	130,000
	수석·차석·상임단원	220,000	90,000	130,000
사무국	사무국장	300,000	170,000	130,000
	사 무 장	240,000	110,000	130,000
	사 무 원	220,000	90,000	130,000

[별표7]

비상임단원 수당 지급액

(단위 : 원)

구분	월지급액	비고
연주수당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9급 1호봉에 해당하는 금액 ×70퍼센트	주 3일 근무 (불가피한 사유로 주 3일 초과 근무 시, 특정한 주에 근무일수 조정 가능)

[별표9]

여비지급기준표

구 분	직 책	지급기준
예술단	지 휘 자	공무원여비규정 제2호 가목
	부지휘자, 악장, 안무자	공무원여비규정 제2호 가목
	훈련장, 수석·차석·상임·비상임단원	공무원여비규정 제2호 나목
사무국	사무국장	공무원여비규정 제2호 가목
	사 무 장	공무원여비규정 제2호 나목
	사 무 원	공무원여비규정 제2호 나목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의3(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상임단원 및 사무국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며,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지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8조(겸임수당) 교수등으로 전문대학 및 대학에서 봉급을 받고 있는 국악단과 교향악단의 지휘자·악장, 무용단의 안무자에게는 상임단원 보수월액의 9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월 보수 지급일에 겸임수당으로 지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제8조(지휘자 등 보수) ①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안무자, 사무국장(이하 “연봉제 대상자”라 한다)의 보수는 계약에 따라 연봉으로 책정하고, 연간 계약총액의 12분의 1을 매월 지급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연봉제 대상자의 연봉은 제3조제1항의 각 호, 제4조의2 및 제6조의 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제4조의4의 가족수당은 별도 지급한다.</p> <p>③ 연봉제 대상자는 전문대학 및 대학에서 교수, 부교수 등 봉급을 받는 자로 겸임 근무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장은 그 대상자의 연봉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p>

제9조(호봉조정) ① 상임단원과 사무국직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 고취를위하여 근무년한 및 직책에 따른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② (생략)

③ 호봉산정에 있어서 [별표 8]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경우 그 경력을 가산한다. 다만, 국악단과 교향악단 지휘자와 악장, 무용단 안무자의 경우 경력가산결과 10호봉에 미달하면 10호봉으로 산정한다.

④ 호봉간의 승급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월 1일자로 승급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10호봉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근무경력 가산결과 총 경력이 10호봉에 도달할 때까지 호봉 승급을 제한한다.

제9조(호봉조정) ① 연봉제 대상자를 제외한 상임단원과 -----
-----근무 연한-----

-----.

② (현행과 같음)

③ -----

-----<단서 삭제>

④ -----

--<단서 삭제>

[별표1]

단원등의 종류와 정원

구분	직책	직급	정원
국악단 (65명)	지휘자	4급상당	1
	악장	5급상당	1
	수석단원	7급상당	7
	차석단원	8급상당	7
	상임단원	8급상당	44
	비상임단원		5
교향악단 (90명)	지휘자	4급상당	1
	악장	5급상당	1
	수석단원	7급상당	13
	차석단원	8급상당	15
	상임단원	8급상당	55
무용단 (25명)	안무자	5급상당	1
	훈련장	6급상당	1
	수석단원	7급상당	1
	차석단원	8급상당	1
	상임단원	8급상당	19
사무국 (10명)	비상임단원		2
	사무국장	5급상당	1
	사무장	6급상당	1
	사무원	7~8급상당	8

[별표2]

봉급지급표

구분	직책	월지금액	승급기준
예술단	국악단·교향악단·지휘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4급상당	
	국악단·교향악단·악장, 무용단·안무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5급상당	
	무용단·훈련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6급상당	
	수석단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7급상당	
	차석단원·상임단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8급상당	
	사무국	사무국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5급상당
사무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6급상당	
사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7~8급상당	· 초임 : 8급상당 · 8년이상 계속 근무한 단원 : 7급상당

[별표1]

단원등의 종류와 정원

구분	직책	직급	정원
국악단 (90명)	지휘자	4급상당	1
	부지휘자	5급상당	1
	악장	5급상당	1
	안무자	5급상당	1
	훈련장	6급상당	1
	수석단원	7급상당	8
	차석단원	8급상당	8
	상임단원	8급상당	62
	비상임단원		7
교향악단 (90명)	지휘자	4급상당	1
	부지휘자	5급상당	1
	악장	5급상당	1
	수석단원	7급상당	13
	차석단원	8급상당	15
	상임단원	8급상당	54
사무국 (13명)	비상임단원		5
	사무국장	5급상당	1
	사무장	6급상당	1
	사무원	7~8급상당	11

[별표2]

봉급지급표

구분	직책	월지금액	승급기준
예술단	지휘자	연봉제	
	부지휘자, 악장, 안무자	연봉제	
	훈련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6급상당	
	수석단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7급상당	
	차석단원·상임단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8급상당	
	사무국	사무국장	연봉제
사무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6급상당	· 단원이 별도로 정함.
사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7~8급상당	· 초임 : 8급상당 · 8년이상 계속 근무한 단원 : 7급상당

[별표3]

직책수당

(단위 : 원)

구분	직책	수당액
예술단	국악단·교향악단 지휘자	450,000
	국악단·교향악단 악장, 무용단 안무자	300,000
	무용단 훈련장	200,000
	수석단원	100,000
	차석단원	50,000
사무국	사무국장	300,000
	사무장	200,000
	사무원	150,000

[별표3]

직책수당

(단위 : 원)

구분	직책	수당액
예술단	지휘자	450,000
	부지휘자	400,000
	악장, 안무자	300,000
	훈련장	200,000
	수석단원	100,000
	차석단원	50,000
사무국	사무국장	300,000
	사무장	200,000
	사무원	150,000

[별표4]

예능수당

(단위 : 원)

	직책	수당액
예술단	국악단·교향악단 지휘자	200,000
	국악단·교향악단 악장, 무용단 안무자	180,000
	무용단 훈련장·수석단원	150,000
	차석단원	130,000
사무국	상임·비상임단원	100,000
	사무국장	180,000
	사무장	150,000
	사무원	100,000

[별표4]

예능수당

(단위 : 원)

구분	직책	수당액
예술단	지휘자	200,000
	부지휘자, 악장, 안무자	180,000
	훈련장, 수석단원	150,000
	차석단원	130,000
	상임·비상임단원	100,000
사무국	사무국장	180,000
	사무장	150,000
	사무원	100,000

[별표6]

직급보조비 및 정액급식비 지급표

(단위 : 원)

구분	직책	지급기준		
		계	직급보 조비	정액급 식비
예술단	국악단·교향악단 지휘자	330,000	220,000	130,000
	국악단·교향악단 악장, 무용단 안무자	280,000	170,000	130,000
	무용단 훈련장	220,000	110,000	130,000
	수석·차석·상임단원	200,000	90,000	130,000
	사무국장	280,000	170,000	130,000
사무국	사무장	220,000	110,000	130,000
	사무원	200,000	90,000	130,000

[별표7]

비상임단원 수당 지급액

(단위 : 원)

구분	월지급액	비고
연주수당	1,000,000	주 3일 근무
특별근무수당	월400,000원 이내	작품 연습 등으로 주 3일 초과할 경우 1일 40,000원 지급

[별표9]

여비지급기준표

구분	직책	지급기준
예술단	국악단·교향악단 지휘자	공무원여비규정 제2호 가목
	국악단·교향악단 악장, 무용단 안무자	공무원여비규정 제2호 가목
	무용단 훈련장·수석· 차석·상임·비상임단원	공무원여비규정 제2호 나목
사무국	사무국장	공무원여비규정 제2호 가목
	사무장	공무원여비규정 제2호 나목
	사무원	공무원여비규정 제2호 나목

[별표6]

직급보조비 및 정액급식비 지급표

(단위 : 원)

구분	직책	지급기준		
		계	직급 보조비	정액 급식비
예술단	지휘자	350,000	220,000	130,000
	부지휘자, 악장, 안무자	300,000	170,000	130,000
	훈련장	240,000	110,000	130,000
	수석·차석·상임단원	220,000	90,000	130,000
사무국	사무국장	300,000	170,000	130,000
	사무장	240,000	110,000	130,000
	사무원	220,000	90,000	130,000

[별표7]

비상임단원 수당 지급액

(단위 : 원)

구분	월지급액	비고
연주수당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9급 1호봉에 해당하는 금액 ×70퍼센트	주 3일 근무 (불가피한 사유로 주 3일 초과 근무 시, 특정한 주에 근무일수 조정 가능)

[별표9]

여비지급기준표

구분	직책	지급기준
예술단	지휘자	공무원여비규정 제2호 가목
	부지휘자, 악장, 안무자	공무원여비규정 제2호 가목
	훈련장, 수석·차석·상임·비상임단원	공무원여비규정 제2호 나목
사무국	사무국장	공무원여비규정 제2호 가목
	사무장	공무원여비규정 제2호 나목
	사무원	공무원여비규정 제2호 나목